

## 수험자 안내문

우리 공단은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시험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시험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합격자 발표 :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60일간) 및 ARS 1666-0100(4일간)
- 제3차 시험 장소 일정 공고 :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둘째,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사전 안내 메시지(알림톡) 발송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자 대상)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안내 메시지는 1일차 시험실 안내 1회 발송
  - Smart Q-finder(시험실 바로가기) 수험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확인 또는 Q-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
-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험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2차 시험 채점종료 이후 채점위원이 작성한 채점평을 공개합니다.
  -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자료실

셋째, 기타 수험 관련 정보(홈페이지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기관) ☎ 합격의법학원	(정보 및 카톡상담) ☎ 동네노무사	(유튜브 채널) ☎ 동네노무사TV
		

##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시 간	시 험 과 목	
<b>1교시</b>	<b>50분</b>	<b>행정쟁송법</b>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의 총면수·문제번호 일련순서·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유색필기구·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3.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해당과목 득점은 조정산출된 점수만 공개하며,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수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행정쟁송법

[문제1] 광주광역시장(이하 “A” 라고 한다)는 2004. 3.경 2명의 3급 승진요인이 발생하자 국가서기관(4급)으로서 광주광역시 기획관으로 근무하던 甲을 포함한 8명의 4급 공무원을 지방부이사관 승진후보자로 선정한 다음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 3급 승진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2004. 3. 31. 현직급 경력, 초임과장 보직일, 시정의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책판단, 종합기획, 조정능력, 조직통솔력 등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甲과 다른 1명을 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A는 2004. 4. 1.자로 甲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여 재단법인 ○○○ 사무국장으로 파견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문(갑 제1호증, 정식의 3급 승진 인사발령문은 아니다)을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표하는 한편, 甲으로부터 지방공무원으로의 전출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전출명령을 제청하였다. 2004. 7. 초경 A는 ○○○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2차례에 걸쳐 甲이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무국장의 교체를 요구하자, A는 위 인사위원회에 甲의 지방부이사관 승진의결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04. 7. 31. 甲에 대한 2004. 3. 31.자 승진임용예정 철회를 의결하였으며, A는 2004. 8. 1.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부이사관 승진예정자에 대한 승진발령을 하고, 2004. 8. 9. 甲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시립민속박물관장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甲은 2005. 9. 30.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甲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를 이유로 자신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20. 기각되었다.

물음1) 甲은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A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부작위가 성립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주어진 사실 외에는 고려하지 마시오).

물음2) 물음1)에서 甲이 적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전제로, A가 소송 계속 중 승진을 거부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설명한 다음 甲이 소송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15점)

물음3) 물음1)에서 甲이 적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전제로,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다음 A가 승진임용을 거부한 경우 甲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한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문제2] 甲은 독립운동가의 양자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권 행사를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고, 잘못 기술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고쳐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찬·보급하며,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전시 및 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물음) 위와 같은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